

# 예 산 총 칙

2012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234,400,000	7,032,000
일반회계	218,200,000	6,546,000
특별회계	16,200,000	486,000
기타특별회계	16,200,000	486,000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286,972	8,609
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	56,314	1,689
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	12,845,107	385,353
지하수관리특별회계	120,000	3,600
주차장특별회계	2,891,607	86,748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 예산” 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540,627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9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와 재해대책의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※ 의존재원 표시

국고보조금→국      광역·지역발전→광      기금→기      시비→시      특별교부세→특세  
 특별교부금→특금      지방채→지